

# 전기공학과 대학원 내규

2019년 7월 전면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내규는 전기공학과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을 위한 요건과 대학원학칙 제5장(자격시험) 제22조(종합시험)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이 내규는 전기공학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석·박사통합과정은 박사학위과정에 준한다.

## 제2장 학위 취득 요건

**제3조 (석사학위 취득요건)** 전기공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2. 석사과정 3학기생은 석사학위 청구 예정 논문의 개요, 연구방법 및 진행사항 등에 관한 중간발표를 해야 하고, 4학기생은 최종발표를 해야 한다. 또한, 이 발표는 학과 학술발표회에서 하여야 하며, 발표자료는 발표회 일주일 이전까지 학과에 필히 제출해야 한다.
3.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일 이전에 국내외 공인학회의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1편이상의 논문을 발표 또는 게재(게재승인도 인정)하여야 한다.

**제4조 (박사학위 취득요건)** 전기공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2. 박사과정 수료자는 반드시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이전까지 학위청구논문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의 논문을 SCOPUS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급 이상의 논문지에 2편 이상 게재(게재승인도 인정)해야 하고, 국내외 공인학회의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. 모든 발표 논문에는 본인 및 지도교수가 포함되어야하며, 발표논문 내용에 관한 판정은 지도교수에 일임한다. 또한, 2014년 1학기 이후 입학하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최종 심사일 이전까지 SCIE급 이상 논문지에 주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(게재승인도 인정)하여야 한다.

**제5조 (연구활동)**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 활동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지도교수 승인 시 예외로 할 수 있다. 연구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.

**제6조 (보칙)** 제3조 3호와 제4조 2호에서 규정한 학위취득 요건은 전기공학과 대학원 소속 일반전임교수 과반수이상의 합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종합시험

**제7조 (시험과목)**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,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. 일반대학원 타 학과에서 수강한 과목은 1과목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으며, 지도교수로부터 수강한 과목은 2과목 이하로 제한한다.

**제8조 (응시자격)**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**제9조 (응시절차)**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제13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종합시험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시험위원)** 학과주임교수는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석사학위과정은 2인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출제방향, 문항별배점, 평가기준 등을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출제한다.

**제11조 (출제방법)**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,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,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
**제12조 (합격인정 점수)**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.

**제13조 (시험시기)** 종합시험의 시행시기는 3월과 9월로 한다.

**제14조 (시험결과관리)** 학과주임교수는 종합시험의 최종 결과를 매학기 초 3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5조 (종합시험면제)** 대학원학칙 제22조 5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이 이를 충족할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### 제4장 보칙

**제16조(준용)** 본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학칙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내규의 제3장(종합시험)은 2019년 9월 종합시험 대상자부터 적용한다. 2019년 9월 이전 종합시험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